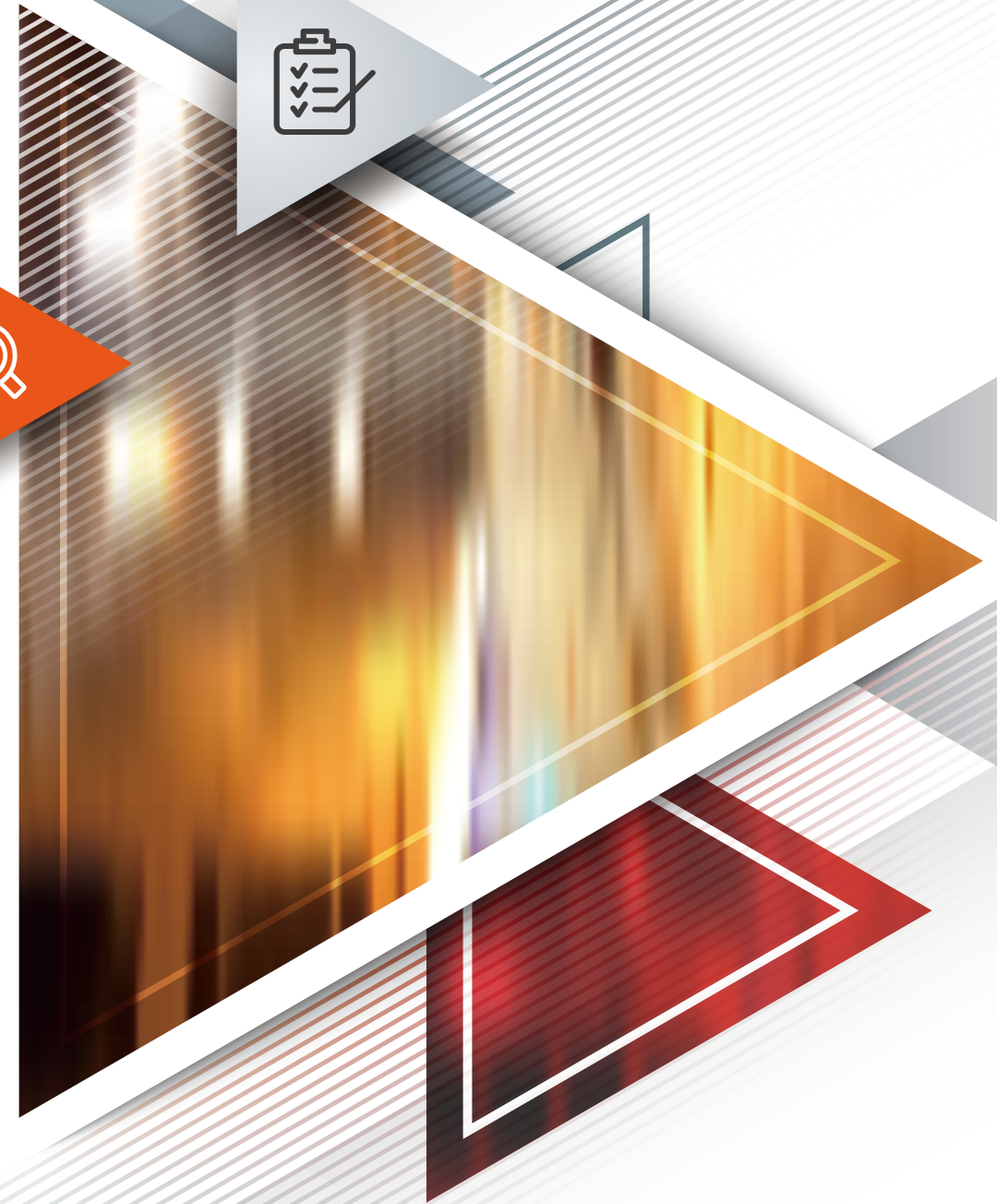




미반환 차량 발생 시 대응프로세스



미반환 차량 발생 시
대응프로세스

[임차인 연락 및 차량 소재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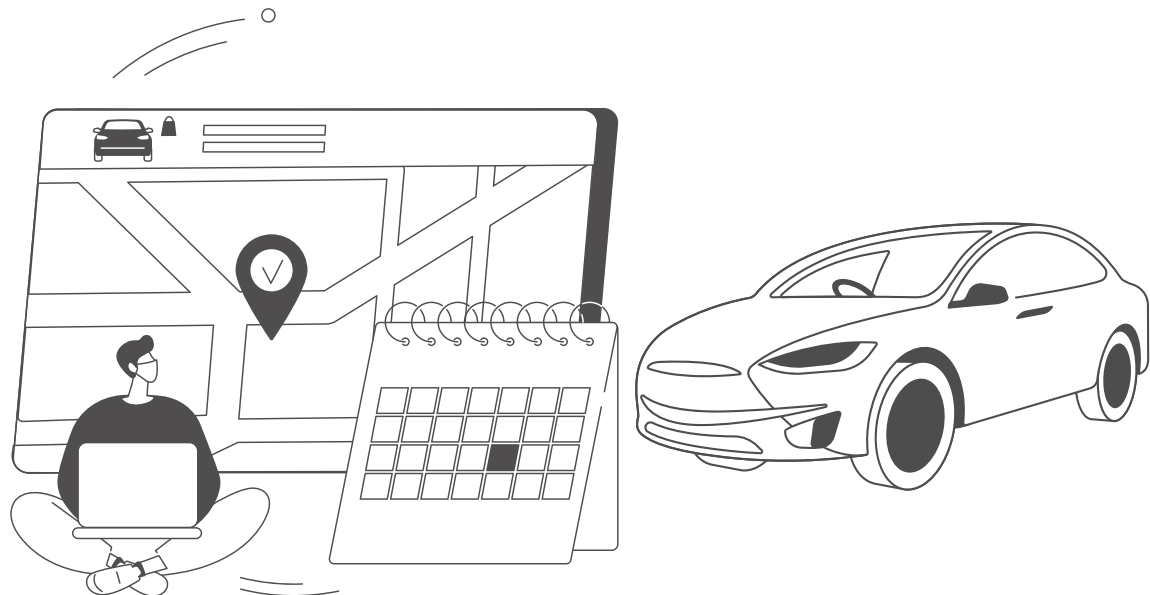
■ 조치요령

- 차량 임대차기간 만료 및 계약 해지 등 후 차량 미반환 시 즉시 임차인에게 연락(전화 등) 시도
- 계약서상 주거지 등을 방문하여 임차인 거주 여부 및 차량 소재 확인
 - ※ 거주자 동의 없이 주거지에 들어갈 경우 주거침입죄 또는 퇴거불응죄가 성립될 수 있음을 유의
- 필요 시 가족 및 지인 등을 통한 청취 조사
 - ※ 위력을 행사하거나 겁박 등 시에는 협박죄 등 성립됨을 유의
- GPS 장착 차량은 차량위치 확인 조치
 - ※ 자동차임대차계약 시 “개인위치정보(GPS 등)의 조회 및 이용 동의”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활용 가능함을 유의

■ 근거규정

■ 자동차대여표준약관 제24조(렌터카 미반환에 대한 조치)

- ① 회사는 고객이 대여기간 종료 시로부터 24시간을 경과 하여도 반환장소에 렌터카를 반환하지 아니하거나 회사의 반환청구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렌터카 회수 및 손해보전에 필요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 렌터카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고객에게 전화를 하거나 주소지를 방문하여 함께 거주하는 가족 및 친족 등에게 청취조사를 할 수 있으며, 차량위치정보시스템의 작동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는 렌터카 대여시 차량위치정보 확인이 가능한 자동차를 대여 할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객에게 고지하고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③ 회사는 제2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대여기간 종료 시로부터 7일이 경과 하였음에도 렌터카와 고객의 소재가 불명한 때에는 도난신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렌터카와 고객의 소재가 불명함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자동차운행정지 명령 요청]

■ 조치요령

- 임차인이 차량 반환을 거부하거나 연락두절, 소재 불분명(차량 포함)한 경우에는 즉시 차량 사용본거지 관할관청에 방문하여 자동차운행정지명령 요청
 - ※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해지 절차를 먼저 진행(내용증명 등을 통해 계약 해지 통보)
- 자동차운행정지명령 신청은 대표자가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위임장을 통한 대리 청구 가능

■ 근거규정

■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 제2항 (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 ① 자동차는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동차사용자’가 운행하여야 한다.
 - * “자동차사용자”란 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자[동법 제2조(정의)]
-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해당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명할 수 있다.
 - 1. 자동차 소유자의 동의 또는 요청
 - 2. 수사기관의 장의 요청. 다만, 수사기관의 장이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동차사용자가 아닌 자가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로 한정한다.

■ 신청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 기타 운행정지를 요청하는 증빙서류(고소장, 내용증명 등)
 - 대표자가 아닌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 “사례”
- 대여 계약 종료 후 미반환하는 경우 → 대여계약서 사본 첨부
 - 계약해지 후 미반환하는 경우 → 대여계약서 사본과 계약해지에 대한 내용증명서 첨부
 - 횡령·사기 등으로 임차인 고소의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 고소장이나 경찰서 발급 사건사고사실확인원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 제5항]

■ 참고사항

- 운행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자동차관리법 제82조 2의2(벌칙)]
- 운행정지 신청 후에는 반드시 임차인에게 통보(내용증명, 휴대전화 문자 등)

[운행정지 명령 자동차의 운행 발견 시]

■ 조치요령

◎ 임차인이 운행할 경우

- 112신고(운행정지 명령 위반차량)하여 임차인을 자동차관리법 제82조 제2호의2 위반으로 형사입건토록 조치하고 차량 회수 협의

※ 임의적 또는 강압적으로 차량회수 시 권리행사 방해죄 등 성립됨을 유의

- 반환 불응 시 발견지 관할 행정관청(교통행정과)에 통보하여 자동차등록 번호판 영치 및 운행정지 조치하고, 차량 회수를 위해 신속히 임차인을 횡령죄로 형사고소 하는 등 반환방안 강구

◎ 제3자가 점유 운행할 경우

- 112신고(운행정지 명령 위반차량)하여 운행자를 자동차관리법 제82조 제2호의2 위반으로 형사입건토록 조치하고 운행자 상대 차량점유 운행 경위·인적사항 등을 확인 차량 회수 협의

※ 임의적 또는 강압적으로 차량회수 시 권리행사 방해죄 등 성립됨을 유의

- 반환 불응 시 발견지 관할 행정관청(교통행정과)에 통보하여 자동차등록 번호판 영치 및 운행정지 조치하고, 발견지 관할 법원 또는 본안의 소 관할 법원(계약상 정해진 관할)에 처분금지·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 및 차량인도의 소 제기하여 차량 회수 추진

■ 참고사항

◎ 자동차관리법(운행정지 명령위반) 등 관련 법령에는 자동차등록 번호판 영치와 영치한 경우 자동차 소유자에게 영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자동차의 처리에 관한 규정은 없음

◎ 임차인이 법령에 근거 없이 또는 자동차대여사업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제3자에게 차량을 운행 시킬 경우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므로 사업자는 제3자가 무단으로 점유하여 운행 시 관할관청에 적극적인 고발 조치 [2022.01.28. 시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4조의5(제3자의 운전방지 의무), 제94조제2항 6의3]

[운행정지 명령 자동차가 주차 중인 경우]

■ 조치요령

◎ 자동차 주변에서 운행자(임차인 여부 등)를 확인하고 확인 후에는 112신고(운행정지 명령 위반차량)하여 운행자가 자동차관리법 제82조 제2호의2 위반으로 형사입건토록 조치하고 차량 회수 협의하며 반환 불응 시 발견지 관할 행정관청(교통행정과)에 통보하여 자동차등록 번호판 영치 및 운행정지 조치하고, 차량 회수를 위해 신속히 운행자(임차인 등)를 횡령죄로 형사고소 하는 등 반환방안 강구

※ 임의적 또는 강압적으로 차량회수 시 권리행사 방해죄 등 성립됨을 유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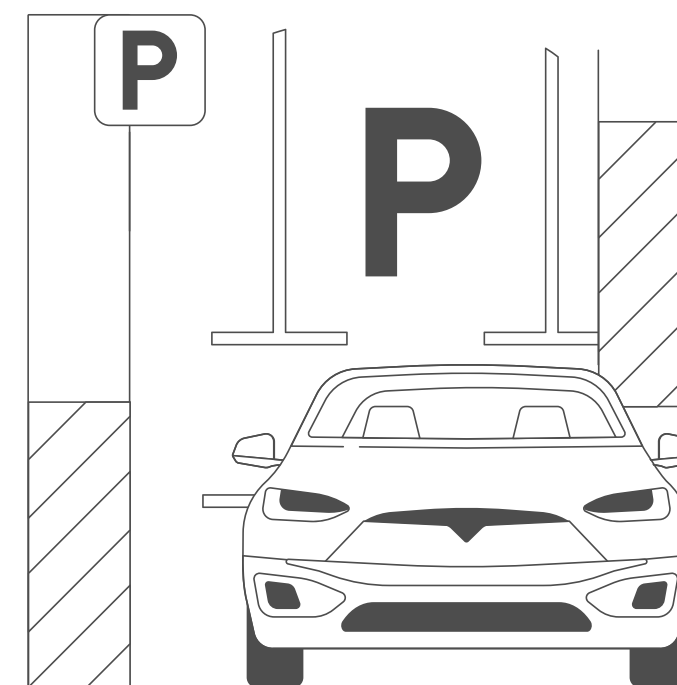
◎ 운행자 확인 불가능할 경우에는 발견지 관할 관청(교통행정과)에 통보하여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조치

◎ 도로 등에 불법 주차(또는 방치)되어있는 경우에는 관할 관청에 주차위반 또는 차량방치 신고 견인조치 후 견인사업소로부터 인수통보를 받으면 운행정지명령 해제하고 견인차량보관소에서 자동차 내에 보관물품 여부를 제3자를 참여시켜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 증거확보 한 후 자동차 회수

■ 참고사항

◎ 운행자 확인이 불가능하여 향후 청구권 행사(자동차인도의 소 등)가 제한되는 경우 형법상 자구행위로 차량을 임의회수할 수 있으나 상황과 정황 등을 신중히 판단하여야 함을 유의

◎ 운행자 확인이 제한된 상태에서 차량을 임의 회수할 경우 향후 차량 내 소지품 소재에 대한 분쟁이 발생될 수 있음을 참고



[운행정지 명령 자동차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고 계속 운행 중인 경우]

■ 조치요령

- 미반환 자동차가 운행정지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운행이 되고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는 해당 자동차를 자동차관리법령에 따라 말소등록 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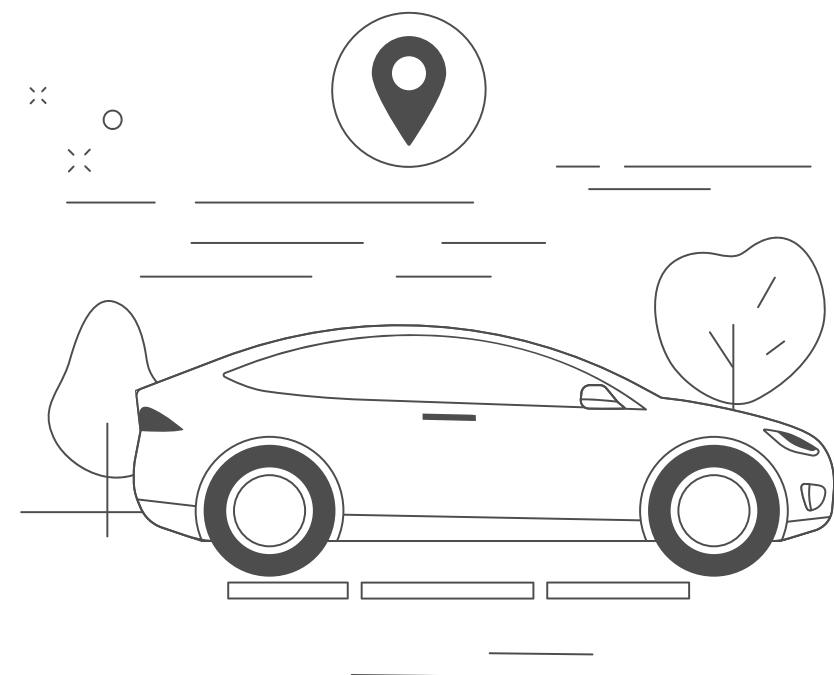
■ 근거규정

■ 자동차관리법 제13조(말소등록)

-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말소등록을 할 수 있다.
3. 제24조의2 제2항에 따른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자동차를 계속 운행하는 경우

■ 참고사항

- 운행정지 명령받은 자동차가 계속 운행 중인 경우 말소등록 여부는 강제사항이 아니라 임의사항이므로 사업자가 선택할 수 있음
- 운행정지 명령받은 자동차의 계속 운행 여부는 도로교통법규 위반(신호위반, 과속, 주·정차 위반 등) 과태료 부과통지 및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통지 등을 통해 입증하여 말소등록 신청
- 말소등록 신청 전에 미반환 임차인 또는 인지하고 있는 운행자 등에 대한 사전 통지 필요



[내용증명 작성 및 발송]

■ 조치요령

- 임차인이 계약종료 등 후에도 차량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 사업자는 민·형사 조치를 위해 임차인에게 휴대전화 문자 등을 통해 차량 반환 등을 통보할 수 있으나 입증 문제 등 보다 법적인 효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내용증명 제도를 적극 활용 필요
- 작성
 - 조합 홈페이지(<http://www.scra.or.kr>) 일반자료실의 내용증명 양식 참조하여 작성
 - ※ 청구원인과 청구취지, 발송일, 작성자 날인 철저히 작성
- 발송
 - 내용증명 3부 작성 후 우체국에 접수 또는 인터넷우체국사이트(www.epost.go.kr)접속 후 작성 발송
 - 임대차계약서 사본, 미납 대여료 명세서 등 첨부

■ 참고사항

- 내용증명이 반송된 경우 내용증명, 자동차임대차 계약서, 미납 대여료 명세서 지참(미납 대여료 채권 금액 50만 원 이상 해당)하여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표 초본 발급받아 임차인 등 주소지 확인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6호, 주민등록법시행령 제47조제4항 (별표2) 4호 개인 및 법인 등의 채권·채무와 관계되는 자]
- 임차인 등 새로운 주소지 확인되면 내용증명 재발송 조치

[형사절차 진행]

■ 조치요령

- 고소장 작성
 - 횡령죄 고소장 작성요령은 조합 홈페이지(<http://www.scra.or.kr>) 일반자료실 고소장 양식 참조하여 작성
- 제출
 - 피고소인(임차인)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차량 수배요청
 - 경찰서 고소사건 수사 기간은 통상 2개월이나 피고소인 소재 불명 시 1개월 정도면 수사중지 결정
 - 수사중지 결정 시 사기, 횡령 등 피해차량은 기타 범죄차량 수배 요청

■ 참고사항

- 피고소인이 경찰서에 출석 또는 수배 검거 시 피고소인과 접촉하는 등 적극 대처로 차량 소재 등을 확인
- 고소 후 취하 시에는 재고소가 불가하므로 차량 반환 전에는 고소 취하 거절

[형사절차 후 말소등록 진행]

■ 조치요령

- ◎ 임차인 등을 형사고소(횡령·사기) 후 수사종결 시에는 미반환 자동차에 대한 말소등록이 가능
- ◎ 말소등록 여부는 강제 규정이 아니고 임의사항이므로 사업자는 말소등록 여부를 자체 결정 가능
- ◎ 차량 미반환을 사유로 말소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형사 절차를 선행하여야 함

■ 근거규정

■ 자동차관리법 제13조(말소등록)

- ⑦ 자동차 소유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 1.본인이 소유하는 자동차를 도난당한 경우
 - 2.본인이 소유하는 자동차를 횡령 또는 편취당한 경우

■ 신청절차

횡령·사기 고소 → 사건사고사실확인원발급(관할 경찰서장) → 조합에 자동차변경신고 또는 관할관청에 감차신고 → 말소등록 신청 → 말소등록일 예정일을 명시하여 그 1개월 전까지 해당 자동차를 횡령·편취 한 것으로 신고된 자에게 말소등록 신청 사실 통보 → 말소등록

■ 신청서류

- ◎ 조합 자동차변경 신고
 - 자동차대여사업계획변경신고서, 자동차등록증 또는 등록원부, 사건사고사실확인원(경찰서장 발급)
- ◎ 관할관청 감차 신고
 - 자동차대여사업변경등록신청서, 신규사업계획대비표, 자동차등록증 또는 등록원부, 사건사고사실확인원(경찰서장 발급)
- ◎ 관할관청 말소등록 신청
 - 자동차말소등록 신청서
 - 조합 발급의 “ 자동차대여사업계획변경 신고필증 ” 또는 관할관청의 자동차대여사업변경등록 신고수리 공문
 - 사건사고사실확인원(경찰서장 발급)
 - 말소등록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승낙서 또는 그에 대항할 수 있는 판결문 등본 첨부

■ 참고사항

- ◎ 말소등록 된 자동차 운행 시 처벌
 - 형사처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자동차관리법 제80조(벌칙) 제1호]
 - 행정처벌: 운전면허 취소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6호]
- ◎ 말소등록 운행 차량 적발 시 운행자는 형사처벌 및 운전면허가 취소됨으로 사업자는 대여계약서에 관련 사항을 명시적으로 기재하고 실제 말소등록 신청 시에도 분쟁 방지 등을 위해 별도로 임차인(실 운전자를 알고 있는 경우에는 실 운전자 등)에게 통보 필요성 있음

[차량 미반환 상태로 검사도래 예정 시 조치]

■ 조치요령

- ◎ 차량 미반환으로 인해 정기검사(또는 종합검사)를 받지 못할 경우에는 차량 미반환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관청에 자동차검사 유예를 신청
 - ※ 자동차검사 연장(또는 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운행정지명령 또는 형사절차(횡령·고소) 진행이 선제적으로 조치되어야 함

■ 근거규정

■ 자동차관리법 제43조(자동차검사)

- ① 자동차 소유자(제1호의 경우에는 신규등록 예정자를 말한다)는 해당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 2. 정기검사: 신규등록 후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 ④ 국토부장관은 자동차 소유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검사를 받을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하거나 자동차검사를 유예(猶豫)할 수 있다.
 - ※ 자동차의 도난·사고발생·폐차·압류 또는 장기간의 정비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동차 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간 동안 당해자동차의 검사유효 기간을 연장하거나 그 검사를 유예함(자동차 관리법시행규칙 제75조제1항제2호)

■ 신청서류

- ◎ 검사유효기간연장(검사유예 · 명령이행기간연장) 신청서
- ◎ 자동차등록증
- ◎ 연장(유예)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 자동차운행정지 명령 등록원부 또는 사건사고사실확인원(횡령, 사기 형사고소 경우)

[차량 미반환으로 차령초과 예상 시 조치]

조치요령

- 차량 미반환 시 말소등록 여부는 사업자의 판단 사항이나 일정한 차령이 경과한 경우에는 해당 차량을 말소등록 하여야 하고 미이행 시에는 행정처분을 받게 됨으로 사업자는 2차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차량 미반환으로 인해 차령초과가 예상될 경우에는 반드시 차령초과 전 말소등록을 하여야 함

근거규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5조(면허취소 등)

-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터미널사업·자동차대여사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한정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터미널사업에 한정한다)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면허·허가·인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하거나 노선폐지 또는 감차 등이 따르는 사업계획 변경을 명할 수 있다
- 36. 제84조에 따른 차령 또는 운행거리를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 다만,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차령을 초과하여 운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자동차관리법 제13조(말소등록)

- 자동차 소유자는 등록된 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등록증,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반납하고 시·도지사에게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7호 및 제8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차령(車齡)이 초과된 경우

말소등록 미이행 시 처분

- 차령 초과 : 사업일부정지 또는 이에 갈음한 과징금 처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별표 3]

구분	위반내용	관계 법조문	처분내용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36.차령초과	3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차령을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	법 제85조 제1항제36호	사업 일부 정지 (90일)	감차명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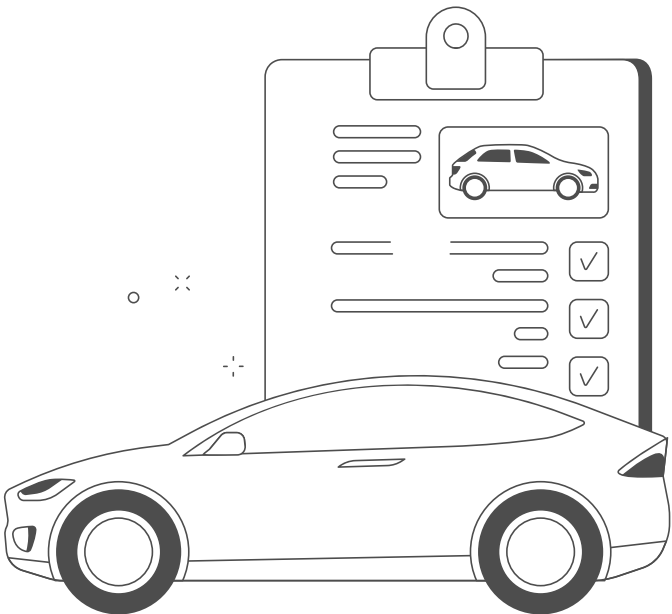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별표 5]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액수

구분	위반내용	관계 법조문	과징금의 액수
			자동차대여사업
14. 차령초과	26.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가 차령을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	법 제85조 제1항제36호	1차 180만원
			2차 360만원

- 차령 초과 말소등록 미이행

자동차관리법시행령 [별표 2] 과태료 부과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만원)
자.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말소등록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1) 법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가) 신청 지연 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	법제84조 제4항제2호의2	5
	나) 신청 지연 기간이 10일을 초과 54일 이내인 경우 (6만 원 ~ 49만 원)		5만원에 1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1만원
	다) 신청 지연기간이 55일 이상인 경우		50



미반환 차량 발생 시 대응 프로세스

별첨자료: 신청서 양식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신설 2016.2.4.>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www.ecar.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운행정지 요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자동차 소유자	성명(명칭)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자동차 정보	등록번호				
	사용본거지				
	용도	비사업용 []관용 []개인용 []법인 · 단체용			
		운수사업용 []자동차대여사업용 []자동차대여사업용 외			
참고사항	※불법 운행된 사유, 불법 점유 및 운전자, 점유 장소, 주요 운행지역 등을 기재하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하여 덧붙이시기 바랍니다.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동차운행정지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자동차 소유자 (서명 또는 인)

시 · 도지사,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 귀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본인은 불법운행 자동차 단속업무 등을 위해 국토교통부, 법무부, 행정자치부, 금융위원회, 경찰청, 경찰서, 시 · 도, 시 · 군 · 구, 금융감독원, 보험개발원, 한국도로공사, 손해보험협회 및 교통안전공단에 자동차 등록자료 등을 제공 및 조회하는 데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뒤쪽)

□말소등록 원인별 첨부 서류

말소등록 원인	신청인 제출 서류	특별시장·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 확인 사항
공통	1.자동차등록증(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인수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다만,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재산관리인이 자동차등록증을 반 납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자동차등록번호판(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인수한 경우와 천재지변·교통사 고·화재 등의 사고에 따른 경우는 제외합니다.) 3. 제3자의 승낙서 또는 확정판결 등 집행력 있는 경본(등록원부상 이해관계인 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다만,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제5호 및 제7호에 따라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4.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및 위임한 사람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인감증명서를 말하며, 해당 법인이 제 출한 사용인감계를 등록 관청이 대조·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 도 됩니다.) 각 1부	1.자동차등록원부 2.폐차인수증명서 3.비사업용자동차를 등록하는 법인 등의 경우에는 사업자등 록증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 서(사업자등록증 사본이나 그 밖의 사용본거지를 알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폐차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발행한 폐차인수증명서 1부	
제작자 또는 판매자에게 반품	자동차 제작자 또는 판매자가 발행한 자동차 반품확인서 1부	
행정처분 이행	행정처분서 사본(자동차운수사업자로서 그 사업면허·등록·인가 또는 신고가 실 효되거나 취소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수출 예정	수출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서 등 수출 예정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도난	관할 경찰서장이 발행한 도난신고확인서 1부	
횡령 또는 편취	관할 경찰서장이 발급한 사건사고사실확인원 1부	
천재지변·교통사고·화재·폭파· 매몰 등의 사고	경찰서장, 소방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등 관련 기관의 장이 발행한 사고 사실 증명 서류 1부	
연구·시험 사용 목적	각각 해당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사고 원인의 규명 등 특수 용도 사용 목적	각각 해당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섬 지역에서의 해체	각각 해당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외교용 또는 SOFA차량으로서 내국민에게 양도	각각 해당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도로 외의 지역에서의 한정 사용 목적	각각 해당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그 밖의 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유	각각 해당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멸실 사실을 인정하는 사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발행한 자동차 멸실 사실 인정서 1부	

유의사항

※ 휴대전화번호와 전자우편(이메일)주소는 귀하의 자동차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고 도움을 드리려는 목적으로 이용되니 적어 주
시고, 변경되는 경우 관할 등록 관청에 알려 주십시오. 다만,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적지 않아도 됩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서식] <개정 2017. 10. 26.>

검사유효기간연장(검사유예·명령이행기간연장)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명칭)			주민(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자동차	등록번호			차명·형식	
	검사유효기간(명령이행기간)			~	
신청내용	연장(유예)신청기간				
	연장(유예)사유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제2항, 「자동차관리법」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의3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자동차등록증 2. 연장(유예)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	-----------------------------------	-----------

유의사항

○ 연장(유예)사유가 적합한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증에 연장(유예)기간을 기재·발급합니다.

자동차처분금지가처분신청

채권자 ○○○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채무자 ◇◇◇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목적물의 표시 별지목록 기재와 같습니다.

목적물의 가격 15,000,000원

피보전권리의 요지 20○○. ○. ○.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청구권

신 청 취 지

채무자는 별지목록 기재 자동차에 대하여 양도, 저당권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원 인

1. 채권자는 채무자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자동차를 20○○. ○. ○.에 금 15,000,000원

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당일 매매대금을 지급하였습니다.
2. 채무자는 매매대금을 지급과 동시에 별지목록 기재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여 주기로 하고서는 지금까지 계속 미루고만 있고, 나중에 알아본바, 채무자는 채권자 이외에도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이 사건 자동차를 타인에게 처분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별지목록 기재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청구소송을 준비 중에 있는바, 위 청구권의 보전을 위하여 이 사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3. 한편, 이 사건 자동차처분금지가처분명령의 손해담보에 대한 담보제공은 민사집행법 제19조 제3항, 민사소송법 제122조에 의하여 보증보험주식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담보제공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 명 방 법

- | | |
|------------|----------|
| 1. 소갑 제1호증 | 자동차매매계약서 |
| 1. 소갑 제2호증 | 영수증 |
| 1. 소갑 제3호증 | 자동차등록원부 |

첨 부 서 류

- | | |
|-----------|------|
| 1. 위 소명방법 | 각 1통 |
| 1. 송달료납부서 | 1통 |

20○○. ○. ○.

위 채권자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자동차의 표시

자동차등록번호	인천○가 ○○○
형식승인번호	○-○○-1234-123
차명	○○○
차종	승용자동차
차대번호	○○○TJ4TlN123456
원동기형식	G4DJ
년식	2000
최초등록일	20○○. ○. ○.
최종소유자	◇◇◇
사용본거지	○○시 ○○구 ○○길 ○○. 끝.



미반환 차량 발생 시
대응프로세스